

	교직원 윤리규정	제 정 일	2020.2.1
		개 정 일	
		개정차수	
		담당부서	교무처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(이하‘대학원대학’이라 한다) 교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의무 및 직무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사명) 대학의 설립목적과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, 대학원대학의 명예와 이익을 존중하며,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 2 장 일반적 윤리와 의무

제 3 조(대학원대학의 명예와 자산존중의무) ① 교직원은 학문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 한도에서 대학원대학의 명예와 이익을 존중하고 우선해야 한다.

② 교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와 비밀을 적절히 유지·관리 하여야 한다.

③ 교직원은 대학의 유·무형의 자산을 보호해야 하며,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4 조(규정준수의무) 교직원은 학교법인 정관 및 대학원대학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 5 조(지위남용금지) 교직원은 직무권한 등을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.

제 6 조(상호존중의무와 차별금지) ① 교직원은 동료 교직원 및 학생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해야 하며, 성별·종교·국적·장애·사상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.

제 7 조(성희롱·성폭력금지) 교직원은 동료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해 성폭력 및 성희롱을 해서는 아니 되며, 이를 묵인해서도 아니 된다.

제 3 장 학생지도에 대한 윤리와 의무

제 8 조(교육 및 지도의무) ① 교원은 학생에게 학습의욕을 고취하고 인류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되도록 지도한다.

② 교원은 학생이 기본교양과 품성 및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하고 지도하여야 한다.

제 9 조(강의 및 공정한 학사관리의무) 교원은 강의의 내실을 기하여, 학업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기타 학사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 10 조(연구 및 논문지도) 교원은 학생의 연구 및 논문을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.

제 4 장 대외 활동에 대한 윤리

제 11 조(교외활동) 교직원은 사회적 현안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표명할 때 대학이나 부설기관을 대표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본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